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2월 17일, 김미애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2월 1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3. 1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 4. 28.)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34회 국회(임시회 · 폐회중) 제1차 전체회의(2026. 4. 29.)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김미애의원)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 · 생활 · 교육 · 취업 · 의료 등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대상아동이 자립한 뒤 기초적인 법률 · 금융 · 경제 지식

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자립지원 시 해당 분야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구체적인 취업 지원의 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립준비청년 대상 취업박람회가 현재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로 개최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자립지원의 내용에 법률·금융·경제 교육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취업 지원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정부가 자립을 준비하는 보호대상아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3).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동찬)

- 「아동복지법」 제38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바,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의 고용률은 52.4%로 2020년 실태조사 때의 42.2%에 비하여 10.2%p 상승하였으나 20~29세 청년 고용률(61.3%)보다는 낮은 수준이었고, 일자리 유형으로는 서비스 종사자 및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중이 다소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2025년 5월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 30,400건 중 20~30대 비중이 22,837건으로 75.1%를 차지하는 가운데¹⁾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2024년 자립지원전담기관²⁾을 자체 조사한 결과 자립준비청년 중 전세사기 등 금융 피해를 입은 사례도 49건으로 집계되었고, ‘자립준비청년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립지원’ 내용에도 경제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음.
- 개정안은 이와 같은 자립준비청년이 처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립지원 내용 중 ‘교육’을 ‘법률·금융·경제 등에 관한 교육’으로 구체화하고, 자립준비청년에게 보다 질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진로·직업 상담, 취업 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 지원을 활성화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착하기 위한 제도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가 적절하다고 보임.
- 특히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에서도, 자립준비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취업 지원으로 일 경험 기회 제공, 사업주·청년 고용지원금 제공, 진로탐색 기회 제공 등이 언급되기도 하였음.

1)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 2025. 6. 26. 현안 보고

2) 「아동복지법」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립준비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취업 지원 응답 >

(단위: 명, %)

구분	1순위
진로탐색 기회 제공	858(17.1)
일 경험 기회 제공	1,220(24.2)
취업상담, 취업정보 제공	778(15.5)
직업훈련 지원	594(11.8)
구직의욕, 자신감 고취	287(5.7)
사업주·청년 고용지원금 제공	930(18.5)
해외취업 지원	328(6.5)
기타	37(0.7)

출처: 보건복지부,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 한편, 현재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하여 통합사례관리를 통하여 법률 및 권익보장, 일자리, 경제(기초생활 지원, 재정관리) 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서민금융진흥원과 연계한 법률 지원 및 경제·금융교육도 지역사회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음.

<자립지원 통합사례관리 분야별³⁾ 지원 실적('25.1월~9월)>

	건 수	금액(백만원)
경제 (기초생활 지원, 재정관리)	11,416	2,485
일자리 (취·창업, 고용유지)	2,458	253
법률 및 권익보장	280	32

※ '25.3분기 기준, 일자리, 경제, 법률·권익보장 분야에 대해 총 2,770백만원, 14,154건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3) 경제, 돌봄,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주거, 일자리, 보육 및 교육, 관계, 안전, 법률 및 권익보장의 분야로 나뉨.

- 아울러,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연계된 17개 시·도별 고용복지플러스 센터(고용노동부 소관)에서도 진로·직업 상담, 취업 알선 등을 지원 중이며, 온라인 플랫폼인 ‘자립정보ON’에서 공공·민간 자립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등 자립지원 사업 전달체계 중 ‘진로지원기관’과의 협력 체계도 구축되어 있음.
- 다만, 현행법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에게 제공되는 ‘교육’ 지원에는 교육부에서 수행하는 대학교육 지원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기회균등전형 제공 등 보다 넓은 범위의 교육이 포함되는데, 개정안과 같이 이를 ‘법률·금융·경제 등에 관한 교육’으로 변경할 경우 오히려 범위가 축소해석될 우려가 있음.
-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의 초기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 금융, 경제 등 자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교육 분야를 명시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취업 지원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려는 취지에 공감하나, 현행 ‘교육’ 분야가 법률, 금융, 경제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고,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현재 다양한 방식으로 취업 지원을 수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생 략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일부 자구를 보완 및 수정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붙임] 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4.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취업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 중 ‘취업알선’을 다양한 지원 사항을 의미하는 ‘취업 정보 제공’으로 수정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원활한 자립지원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제1호의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8조제1항제1호의3 중 “취업알선”를 “취업 정보 제공”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정부수정안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 보호 종료 또는 아동 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8조(자립지원) ① -- ----- ----- ----- ----- ----- ----- -----.	제38조(자립지원) ① -- ----- ----- ----- ----- ----- ----- -----.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의료 등의 지원	1. -----법 률·금융·경제 등 에 관한 교육, 주거, 생활 및 의료----- -----	1. -----법 률·금융·경제 등 에 관한 교육, 주거, 생활 및 의료----- -----
1의2. (생략) <u><신설></u>	1의2. (현행과 같음) 1의3. 자립을 위한 진 로·직업상담, <u>취업 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 지원</u>	1의2. (현행과 같음) 1의3. 자립을 위한 진 로·직업상담, <u>취업 정보 제공, 채용박 람회 개최 등 취업 지원</u>
2. ~ 6. (생략) ② · ③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 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중 “주거·생활·교육·취업·의료”를 “법률·금융·경제 등에 관한 교육, 주거, 생활 및 의료”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자립을 위한 진로·직업상담, 취업 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 지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 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 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u>주거 · 생활 · 교육 · 취업 · 의료</u> 등의 지원	제38조(자립지원) ① ----- ----- ----- ----- ----- -----.
1의2. (생 략) <u><신 설></u>	1. ----- <u>법률 · 금융 · 경제 등에 관한 교육, 주거, 생활 및 의료</u> -----
1의3. (생 략)	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3. 자립을 위한 <u>진로 · 직업 상담, 취업 정보 제공, 채용박 람회 개최 등 취업 지원</u>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